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5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 우재준 • 서천호 • 이성권

김소희 • 안상훈 • 박충권

인요한 • 진종오 • 서일준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,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,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·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,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용권자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·공공 단체·정당,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·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,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7).

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7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임용권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행정기관·공공단체·정당,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·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및 정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5조의7(관계 기관 등에 대한
	협조 요청) ① 임용권자는 소
	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
	하면 행정기관・공공단체・정
	당,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
	•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
	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
	받은 기관 및 정당은 특별한
	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
	<u>다.</u>